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현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419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10.

발의자 : 이현승 · 김도읍 · 유기준
나경원 · 김석기 · 이양수
지상욱 · 엄용수 · 김광림
이명수 · 이만희 · 윤한홍
전희경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·용도·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,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).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건축물의 위치·용도·규모”를 “건축물의 위치·용도·규모,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·규모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양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<u>건축물의 위치·용도·규모</u>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6조(분양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<u>건축물의 위치·용도·규모,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·규모</u>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